

부 산 가 정 법 원

제 1 가 사 부

판 결

사 건 2016드합201435(본소) 이혼

2017드합59(반소) 이혼 등

원고(반소피고) 갑 (1960년생, 여)

주소 부산

등록기준지 경남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

담당변호사

피고(반소원고) 을 (1953년생, 남)

주소 부산

등록기준지 경남

변 론 종 결 2017. 5. 25.

판 결 선 고 2017. 6. 29.

주 문

1. 본소에 의하여, 원고(반소피고)와 피고(반소원고)는 이혼한다.
2. 피고(반소원고)는 원고(반소피고)에게 위자료로 1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.

7. 12.부터 2017. 6. 29.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원고(반소피고)의 나머지 본소 위자료 청구와 피고(반소원고)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.
4. 피고(반소원고)는 원고(반소피고)에게 재산분할로 103,000,000원을 지급하라.
5. 소송비용은 본소, 반소를 합하여 그 중 30%는 원고(반소피고)가, 나머지는 피고(반소원고)가 각 부담한다.
6.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본소: 주문 제1항 및 피고(반소원고, 이하 '피고'라 한다)는 원고(반소피고, 이하 '원고'라 한다)에게 위자료로 5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 재산분할로 160,386,711원을 지급하라.

반소: 반소에 의하여,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.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5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와 피고는 1985. 4. 22.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, 슬하에 성년에 이

른 자녀 2명을 두었다.

나. 원고가 2009년경 거래처 직원 양** 일행과 창원에 등산을 다녀온 이후 피고가 원고와 양**와의 불륜행위를 의심하게 되면서 원·피고의 혼인관계가 악화되었다.

다. 피고는 2013. 12. 11. 술에 취하여 원고와 딸에게 폭언과 함께 뺨을 때리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는데, 이 일로 인하여 피고가 폭행 혐의로 현행범체포되기도 하였다.

라. 원고는 2016. 5.경 집을 나와 현재까지 피고와 별거하고 있다.

마. 원고는 2016. 6. 20. 이 사건 본소를, 피고는 2017. 3. 30. 반소를 각 제기하였다.

[인정근거] 갑 제1 내지 5, 9, 10호증(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본소 및 반소 각 이혼,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본소 이혼 청구: 민법 제840조 제3, 6호의 사유로 이유 있음.

나. 본소 위자료 청구: 10,000,000원 인정.

다.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: 각 이유 없음.

[판단근거]

① 혼인관계 파탄 인정: 원·피고가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고, 서로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여 앞으로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함.

②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: 부부는 혼인생활을 함께 있어 애정과 신의 및 인내로써 서로 이해하고 보호하여야 함에도, 원고를 의심하고 폭언과 폭행을 행사함으로써 혼인관계 유지에 대한 원고의 희망을 잃어버리게 만든 피고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음(이에 대하여 피고는, 원고의 잦은 무단가출 등이 이 사건 혼인의 파탄 원인이라고 주장하나,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 주장사실

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).

③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 지급의무 및 액수: 피고는 혼인관계 파탄에 따라 원고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, 그 액수는 앞서 본 혼인파탄의 원인 및 책임의 정도, 원·피고의 혼인지속기간, 연령, 직업 및 경제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10,000,000원으로 정함.

다. 소결

따라서, 본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,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16. 7. 12.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. 6. 29.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본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재산형성 및 유지 경위

피고는 혼인기간 중 박스 제조공장을 운영하여 왔고, 원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는 한편, 위 공장에서 일을 돕기도 하였다.

[인정근거] 앞서 든 증거들, 변론 전체의 취지

나.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

1) 분할대상 재산: 별지1 '분할대상재산명세표' 기재와 같다(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의 기준시점을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제기일인 2016. 6. 20.경으로 정하였다).

2)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

가) 원고의 순재산: 84,136,921원

나) 피고의 순재산: 384,908,843원

다) 원·피고의 순재산 합계: 469,045,764원

[인정근거] 갑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범천동새마을금고, IBK기업은행, 메리츠화재해상보험, 삼성생명보험, 신한생명보험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다.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

별지1 '분할대상재산명세표' 및 별지2 '불인정재산명세표' 중 각 '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'란 기재와 같다.

라. 재산분할의 비율 및 방법

1) 재산분할의 비율: 원고 40%, 피고 60%

[판단근거] 위에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, 그 밖에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및 파탄경위, 원·피고의 연령, 직업 및 소득활동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참작.

2) 재산분할의 방법: 당사자들의 의사, 앞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소유명의, 취득 및 유지 경위, 이용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, 분할대상 재산을 현재의 명의대로 그대로 귀속시키면서 위 분할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금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.

3)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: 103,000,000원

[계산식]

①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

순재산 합계 469,045,764원 $\times$ 40% = 187,618,305원(원 미만은 버림)

② 위 ①항의 돈에서 원고의 순재산을 뺀 금액

103,481,384원(= 187,618,305원 - 84,136,921원)

③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

위 ②항의 금액에 약간 못 미치는 103,000,000원

마. 소결

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03,000,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4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, 본소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,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하고,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김종민

판사 정현숙

판사 지현경

별지1

분할대상재산명세표

소유자 등		순 번	재 산의 표 시	재 산의 가 액 (단 위: 원)	증 거	당 사 자의 주 장 및 판 단										
원 고	적 극 재 산	1	삼성생명보험 해지환급금 및 예상해지환급금 3건 <table><tr><th>계약번호</th><th>금액(원)</th></tr><tr><td>*****0031</td><td>47,760,337</td></tr><tr><td>120453621**</td><td>19,670,840</td></tr><tr><td>120453621**</td><td>266,696</td></tr><tr><td>합계</td><td>67,697,873</td></tr></table>	계약번호	금액(원)	*****0031	47,760,337	120453621**	19,670,840	120453621**	266,696	합계	67,697,873	67,697,873	갑 12-1, 3	
		계약번호	금액(원)													
		*****0031	47,760,337													
		120453621**	19,670,840													
	120453621**	266,696														
	합계	67,697,873														
	2	신한생명보험 예상해지환급금	5,137,738	갑 12-2												
3	IBK기업은행 예금 2건 <table><tr><th>계좌번호</th><th>금액(원)</th></tr><tr><td>259-017136-03-***</td><td>460,262</td></tr><tr><td>259-017136-01-***</td><td>10,841,048</td></tr><tr><td>합계</td><td>11,301,310</td></tr></table>	계좌번호	금액(원)	259-017136-03-***	460,262	259-017136-01-***	10,841,048	합계	11,301,310	11,301,310	갑 13					
계좌번호	금액(원)															
259-017136-03-***	460,262															
259-017136-01-***	10,841,048															
합계	11,301,310															
소 계		84,136,921														
소 극 재 산	1	없음														
	소 계		0													
		원 고의 순 재 산 (적 극 재 산 - 소 극 재 산)		84,136,921												
피 고	적 극 재 산	1	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소재 아파트	245,000,000	일 치											
		2	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소재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	20,000,000	일 치											

3	범천동새마을금고 예금, 출자금, 공제 6건		범천동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	
	계좌번호	금액(원)		
	1521-****-***_1	18,342		
	****-****-***_9	4,800,000		
	****-****-***_6	1,773,200		
	****-****-***_7	666,000		
	9601-****-***_0	217,440		
	****-****-***_9	472,400		
	합계	7,947,382		
	7,947,382			
4	IBK기업은행 예금 5건		IBK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	피고는 위 각 예금 등을 자재구입, 임금 지급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, 이 법원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가 위 각 돈을 부부공동생활 비용이나 부부공동재산의 형성·유지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,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	계좌번호	금액(원)		
	259-*****-03-***	3,584,323		
	259-*****-01-***	521,404		
	259-*****-75-***	2,010,000		
	259-*****-96-***	1,386,140		
	259-*****-04-***	4,287,174		
합계	11,789,041			
11,789,041				
5	메리츠화재해상보험 예상해지환급금 6건		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	
	증권번호	금액(원)		
	6A*****	654,017		
	6J*****	1,438,694		
	606**_*****	195,530		
	60***_*****	150,749		
	60***_*****	4,958,758		
	608***_*****	62		
합계	7,397,810			
7,397,810				
6	삼성생명보험 예상해지환급금 5건		삼성생명보험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	
	증권번호	금액(원)		
	***0027	36,987,161		
	***0030	4,522,026		
	***0033	211,504		
	***0040	2,781,453		
	***0041	22,141		
합계	44,524,285			
44,524,285				

		7	***** 예상해지환급 금 (0000*****	12,500,325	일치	
		8	차량	35,750,000	갑 14	피고는, 김경수로부터 위 차량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3,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차량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, 별지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채무는 혼인파탄 이후에 발생한 채무로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,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		소계		384,908,843		
	소극재산	1	없음			
		소계		0		
		피고의 순재산 (적극재산 - 소극재산)		384,908,843		
원, 피고의 순재산 합계				469,045,764		

불인정재산명세표

소유자 등		순번	재산의 표시	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												
피고	적극 재산	1	피고의 조카 ***에 대한 2016. 3. 9.자 대여금 채권 20,000,000원	범천동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, 2016. 3. 9. 피고의 계좌에 합계 20,000,000원이 ‘강진숙’ 명의로 ‘입금’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, 피고가 위 돈을 장도형에게 대여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.												
	소극 재산	1	사업상 미수금 채무 4건 <table border="1"><thead><tr><th>채권자</th><th>금액(원)</th></tr></thead><tbody><tr><td>****</td><td>53,000,000</td></tr><tr><td>*****</td><td>44,000,000</td></tr><tr><td>*****</td><td>39,000,000</td></tr><tr><td>****</td><td>136,700,000</td></tr><tr><td>합계</td><td>272,700,000</td></tr></tbody></table>	채권자	금액(원)	****	53,000,000	*****	44,000,000	*****	39,000,000	****	136,700,000	합계	272,700,000	을 제1호증의 1, 2, 3, 5의 각 기재만으로는 혼인파탄 당시에 위 각 채무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와 그 금액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이를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.
		채권자	금액(원)													
		****	53,000,000													
*****	44,000,000															
*****	39,000,000															
****	136,700,000															
합계	272,700,000															
2	***에 대한 차용금 채무 30,000,000원	을 제1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, 위 채무는 혼인파탄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서, 부부공동생활이나 부부공동재산의 형성·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,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.														
3	*****에 대한 채무 4,700,000원	을 제1호증의 6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														